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2. 제정이유
○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○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

4. 관련법령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5. 검토의견
□ 제출자, 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국토해양부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,
○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영세 운송업체인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

□ **「차고지 설치면제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」**를 내용으로 하는 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』과 『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』을 일부 개정하여 **「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표준안」**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였습니다.

□ 결론적으로,
○ 본 제정 조례안도 **국토해양부의 「조례제정 표준안」**을 기준으로 제정했고, **각 조문의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제반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**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